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65
----------	------

2025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0일, 박춘선 의원 외 30명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박춘선 의원]

가. 제안이유

○ 무분별한 개발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생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태계교란 생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유형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사업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정의 규정(안 제2조).

2)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규정(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 증가에 기인하는 사회적·환경 생태적 피해와 관련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의하고 관련 관리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임.임.

나. 검토의견

- ‘생태계교란 생물’에 관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장¹⁾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시행 '25.9.29.)한 바 있음.
- 안 제2조는 ‘생태계교란 생물’ 이외에 법 제5장 및 서울시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에 관하여 정의하는 것이고, 안 제6조는 현행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²⁾에 규정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제21조~제25조)

(제21조~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관리)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 · 재배의 유예)

2) 제1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4.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6.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분포와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 <u>생태계교란 생물</u> ”이란 「 <u>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u>〈신 설〉</u>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u>생태계교란 생물</u> ”이란 「 <u>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4. “ <u>유입주의 생물</u> ”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 <u>외래생물</u> ”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6. “ <u>생태계위해우려 생물</u> ”이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u>〈신 설〉</u>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② (생 략) 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 계획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3.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4. (생략)
④ (생략)

〈신설〉

1.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삭제〉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 사업) 시장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분포와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험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6조 ~ 제14조 (생략)

제7조 ~ 제15조 (현행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